

##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관련 교육기관으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8년 6월 30일 개정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법준수의식 제고 및 범위반의 사전예방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범위반점수를 감점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협회가 인센티브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하도급관련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교육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본 협회와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4개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99년도 3/4분기부터 각 교육기관별로 년 1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추후 운영과정에서 교육 수요에 따라 실시횟수 및 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있다.

동 인센티브제도와 관련된 교육은 건설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공사관리부서나 외주관리부서 또는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 이상, 제조하도급업체의 경우에는 구매담당부서나 재경담당부서 등의 이사급 이상을 교육대상자로 하며, 교육에 참가할 경우 향후 사건조치시 과거 3년간 범위반점수의 누계에서 2점을 감점받게 된다.

### ◆ 하도급법 위반점수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내용 ◆

| 인센티브 대상       | 인센티브 내용  |
|---------------|--|
| ◎ 우수업체 포상     | ☞ 하도급거래 공정화와 관련 중앙관서의 장 이상으로부터 우수업체 표창을 받은 경우 사건조치시 과거 3년간 범위반점수 누계에서 2점을 감점처리 |
| ◎ 교육 이수       | ☞ 하도급관련 담당임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사건조치시 과거 3년간 범위반점수 누계에서 2점을 감점처리        |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 ☞ 모든 하도급거래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사건조치시 과거 3년간 범위반점수 누계에서 1점을 감점 처리                |

## '99년도 하반기 공정거래위탁교육 일정 안내

본 협회는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자율적인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위탁으로 업종별 및 공정거래제도 적용 분야별로 공정거래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쟁정책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99년 상반기에는 대규모기업집단, 독과점사업자, 약관관련업체 및 하도급관련업체 등 8개 분야에 걸쳐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9년 하반기에는 사업자단체 등 5개 분야에 대해 공정거래교육 및 세미나 과정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본 협회의 '99년 하반기 공정거래교육 및 세미나의 실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교 육 대 상               | 실시일정(예정) |
|-----------|-----------------------|----------|
| 국제계약관련업체  | 국제계약관련업체 및 관련단체 임직원   | 9월       |
| 사 업 자 단 체 | 사업자단체 임직원             | 9월       |
| 소 비 자 단 체 | 소비자관련단체 임직원 및 회원      | 10월      |
| 공정거래세미나   | 대기업체 임원 및 간부직원        | 10월      |
| 지 방 교 육   | 지방소재 주요업체 임직원         | 11월      |
| 모 니 터 교 육 | 공정거래모니터요원(수도권 및 강원지역) | 11월      |
| 조 찬 간 담 회 | 회원 및 비회원사 임직원         | 9월, 11월  |
| 7개 분야     | 780명                  |          |

\* 상기 교육일정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협회의 교육에 대한 문의는 기획부 (☎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명칭변경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안내

### 협회 명칭변경

현행 본 협회의 명칭이 협회의 기능이나 성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호칭하기가 어렵다는 여론에 따라 회원총회의 의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99년 6월 11일부터 협회명칭을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The Korea Fair Trade Association)로 변경하고 더욱 새롭고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또한 본 협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본 협회 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완료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 등의 하도급분쟁사안에 대하여 보다 객관성있고 공정한 분쟁조정에 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99년도 한국공정거래협회 주요 사업

- (1)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과 운용방향을 포함한 업종별·분야별 교육 및 연수
- (2)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활동과 심결사례, 주요 심결사례 해설 및 평석,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학계 및 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정책제언 및 해외경쟁정책 동향 등을 수록한 전문지인 월간「공정경쟁」, 발간·배포
- (3) 「'97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이후 제·개정된 공정거래관련 법령, 고시 및 기준, 지침 내용 등을 보완·수록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 (4)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 해설집 발간·배포 및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보완 작성
- (5)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제도 운영내용 및 개선방향에 관하여 공정거래 정책당국과 민간업계와의 의견교환을 위한 공정거래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 (6)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제조·수리 및 건설위탁 등의 하도급분쟁을 자율 조정
- (7) 회원사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상담을 지속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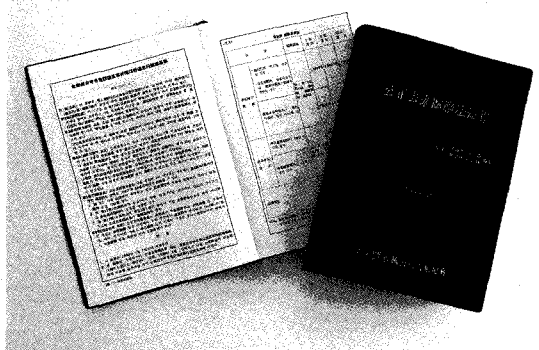
## '99 공정거래관련법규집 발간 안내

본 협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 각종 공정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을 출간하였다.

'9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및 약관법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관련법과 이에 관련된 고시 및 지침의 개정내용을 모두 수록하였다.

특히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지침이나 내부자료로만 활용되어 오던 과징금부과세부기준에관한고시와 각 분야별 표시·광고에 관한 지침, 산업자원부로부터 이관되어진 방문판매법과 할부판매법, 그리고 올 2월 5일에 공포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약칭 카르텔일괄정리법) 등을 수록함으로써 기업인은 물론 법령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높도록 하였다.

동 공정거래법규집의 판매가는 25,000원이며, 수록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

2) 기업결합의신고요령

3) 기업결합심사기준

4) 지주회사의범위에관한심사요령

5)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신고및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보고에관한요령

6) 기업결합신고규정위반사건에대한과태료  
기준

7) 공동행위및경쟁제한행위의인가신청요령

8) 입찰질서공정화에관한지침

9) 사업지단체활동지침

10)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  
래행위의유형및기준

11)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기준

12)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유형  
에관한지침

13) 가명사업(프랜차이즈)에있어서의불공정  
거래행위의기준

14) 대규모기업집단의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  
심사기준

15)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

- 16) 국제계약상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 기준
- 17) 국제계약심사요청요령
- 18)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시간절차등에 관한규칙
- 19) 법위반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 20)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의한 이해관계인등에대한경비지급규정
- 21) 경쟁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 2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23) 체납가산금에대한가산금요율고시
- 24) 독점금지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 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 25) 공정거래위원회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 규정

## II. 하도급법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
  - 2) 제조위탁의대상이되는물품의범위고시
  - 3) 선급금등자연이자지급시의자연이자율고시
  - 4)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 5) 하도급자문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 6)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7) 과징금부과기준

## III. 약관규제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위촉및운영에관한규정

## IV. 표시·광고법

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2. 고시·지침 등
  - 1) 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2) 주택광고에관한심사기준
  - 3) 환경관련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4) 상가등의분양및대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5)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6) 보험상품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7) 수상·인증등의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8)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규정
  - 9) 통신판매표시·광고에관한공정거래지침
  - 10) 주요소동서유판매업에이어서서의공급자표 시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 V.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VI. 할부거래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VII.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 되는부당한공동행위의등의정비에관한법률

## VIII. 공정거래위원회운영

1. 공정거래위원회조직체
2. 공정거래위원회조직체시행규칙
3. 공정거래위원회회의임전결규정
4. 지방사무소업무처리지침

※ 「99공정거래관련법규집」에 대한 문의 및 구입신청은  
본 협회 조사부 ☎ 775-8870-2)로 하시기 바랍니다.